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8년 5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655호

###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경영,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회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 품질경영,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업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업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업 (화공) (가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업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업 (농업)	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업 (축산)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조경)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항로표지, 수질환경)
해양수산 (선박)	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품질경영, 포장)

직렬 \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가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설 (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전자,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방송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경영) 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기계운영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경영)</p> <p>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lt;기계분야&gt;)</p> <p>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산업기사(유회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lt;기계분야&gt;, 품질경영, 영사)</p>
화공운영		<p>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장(위험물, 가스)</p>	<p>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가스운영		<p>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p> <p>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p> <p>기능장(가스, 위험물)</p>	<p>산업기사(가스, 위험물, 화공)</p>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p>기술사(조선,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p> <p>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시)</p> <p>1·2·3·4급 항해사</p> <p>1·2·3·4급 기관사</p>	<p>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p> <p>5·6급 항해사</p> <p>5·6급 기관사</p>
농림운영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p> <p>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p> <p>기능장(산림)</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p>
보건운영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p> <p>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p>

##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세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충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철도전기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농 업 연 구	<p>기술사(종자, 원예, 농화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종자,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산자동화,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p> <p>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p>
농 업 연 구 (축 산)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p> <p>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p> <p>수의사</p>
농 업 연 구 (농 공)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경영)</p> <p>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p>
농 업 연 구 (농 식품개발)	<p>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영양사, 위생사</p>
녹 지 연 구	<p>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p> <p>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조경)</p>
해 양 수 산 연 구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p> <p>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생명공학)</p>
보 건 연 구	<p>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p> <p>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p> <p>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p>
환 경 연 구	<p>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p> <p>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p> <p>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p>
시 설 연 구 (토 목)	<p>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p> <p>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p>
시 설 연 구 (건 축)	<p>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p> <p>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p> <p>건축사</p>

### 3. 지도사

직렬	계급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일반기계,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식품,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 4. 삭제

##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

### 1.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

한국외국어대 등 어학능력검정	영어				제2외국어 공통		평정점
	토플 (TOEFL)	토픽 (TOEIC)	텝스 (TEPS)	플렉스 (FLEX)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90점 이상	PBT 630점 이상 CBT 263점 이상 IBT 108점 이상	945점 이상	900점 이상	900점 이상	70점 이상	850점 이상	0.25
80점 이상	PBT 590점 이상 CBT 243점 이상 IBT 97점 이상	870점 이상	800점 이상	800점 이상	60점 이상	750점 이상	0.20
7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700점 이상	50점 이상	650점 이상	0.15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평정점
일본어 능력시험 (JPT)	일본어 능력시험 (JLPT)	한어 수평고시 (신HSK)	델프/달프 (DELFD/DALF)	델레 (DELE)	토르플 (TORFL)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840점 이상	N1 100점 이상	6급 180점 이상	DALF C1 이상	C1 이상	2단계 이상	GZ C1 이상	0.25
740점 이상	N2 150점 이상	5급 210점 이상	DELFD B2 이상	B2 이상	1단계 이상	GZ B2 이상	0.20
640점 이상	N2 10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DELFD B1 이상	B1 이상	기본단계 이상	GZ B1 이상	0.15

## 2 그 밖의 자격증

구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 공 고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17.01.02., 조례 제1405호)에 따른 조직 개편사항(박물관관리과 신설, 2017.02.15)을 반영
- 향후 전시관, 자료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박물관의 확장성과 방향성 제시

### 2. 주요내용

- 박물관의 위치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 추가(안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호)
- 박물관장의 직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박물관업무담당계장 ⇒ 박물관관리과장 (안 제4조 제1항)
- 관람료 할인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 내용 조정 (안 제7조 제3항)

○ 시설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 제31조 ⇒ 제32조, 기획전시설 ⇒ 규장각실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박물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방문: (54021) 군산시 해망로 24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전화: 063-454-7872

- FAX: 063-443-8284

- 전자우편: star062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박물관관리과 박물관운영계 (전화 063-454-78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나. 입법예고 : '18. 5월 중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미동 1-67번지 인근**”을 “**해망로 240 인근,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진포해양테마공원을 포함한다.**”를 “**진포해양테마공원,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박물관업무담당계장**”을 “**박물관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박물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린 우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타도의 인접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는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를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리업무계장, 서기는 관리업무담당자 로**”를 “**박물관운영계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별표3”**”을 “**별표3**”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31조에 따른 기획전시실**”을 “**제32조에 따른 규장각실**”로,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38조 중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2 중 “**【 선린우호상 필요에 의한 감면 】**”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별표 4 중 시설명란의 “**기획전시실**”을 “**규장각실**”로 하고 사용기준란의 “**(09:00·12:00)**”을 “**(09:00~12:00)**”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p> <p>1. (생략)</p> <p>2. 위 치 : 군산시 <u>장미동 1-67번지 인근</u></p> <p>3. (생략)</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p> <p>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공간과 <u>진포해양테마공원</u>을 포함한다.</p> <p>2. ~ 9. (생략)</p> <p>제4조(관리 등) ① 박물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u>박물관업무담당계</u>장으로 하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u>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p>	<p>제2조(설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해망로 240 인근,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u></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 -----.</p> <p>1. ----- ----- ---- <u>진포해양테마공원,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을 포함한다</u></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리 등) ① ----- -----. ----- ---- <u>박물관관리과장</u>----- ----- -----.</p> <p>②----- ----- <u>박물관운영위원회</u>----- -----.</p>

다.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선린 우호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타도의 인접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는 "별표 2"와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④ 제32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관람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 ①·② (생략)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

제7조(관람료) ① -----  
----- 별표 1-----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는 별표 2-----  
-----  
-----.

<삭제>

제8조(무료관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20조(간사 등) ① -----  
-----

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업무 계장, 서기는 관리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생략)

제25조(유물의 이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촬영 및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3조(시설사용료) 제31조에 따른 기획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 10일전 까지 "별표4"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4"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

----- 박물관운영계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유물의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3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설사용료) 제32조에 따른 규장각실-----

----- 별표 4 -----  
----- . -----  
-----  
-----  
-----.

제3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

----- 별표 4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38조(준용) -----

-----

흥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

**관람료 감면(제7조 제3항과 관련)**

【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생략)

【 개별권(박물관) 】 (생략)

【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생략)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생략)

**【 선린우호상 필요에 의한 감면 】**

- 시장이 선린우호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수준의 감면 및 별도 할인을 적용

**별표 4 사용료(제33조 관련)**

시설명	사 용 기 준	요 금	비고
기획전시실	가. 1일 (09:00~17:00)	50,000	
	나. 오전 (09:00~12:00)	20,000	
	다. 오후 (13:00~17:00)	30,000	

-----  
-----  
-----,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별표 2]

**관람료 감면(제7조 제3항과 관련)**

【 통합권(박물관/조선은행/18은행/진포해양테마공원) 】 (현행과 같음)

【 개별권(박물관) 】 (현행과 같음)

【 개별권(진포해양테마공원) 】 (현행과 같음)

【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 】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4 사용료(제33조 관련)**

시설명	사 용 기 준	요 금	비고
규장각실	가. 1일 (09:00~17:00)	50,000	
	나. 오전 (09:00~12:00)	20,000	
	다. 오후 (13:00~17:00)	30,000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 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
3. 미 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박물관관리과 주용진
연락처	063-454-7872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와 실행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총칙: 목적·정의·시장의 책무·시민의 참여 등
- 나. 인구정책의 수립: 시행계획 수립·사업규정·자료조사 및 연구 실시 등
- 다.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회 설치·구성·운영규정
- 라. 인식개선: 인구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인구의날
- 마. 보칙: 홍보·민간의 참여·포상·환수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방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 전화: 063-454-2323
- FAX: 063-452-8157
- 전자우편: ssdw0116@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전화 063-454-23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붙임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나.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 다. 그 밖의 인구 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2. “다자녀 가정”이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만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인구 정책 수립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개선시책 발굴 및 추진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인구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책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
3.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지원
4.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5.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지원
6.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지원
7.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8.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인구감소 방지와 유출 극복 및 인구 유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분야별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연계와 시행을 위해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민·기업·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조사·연구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료조사 및 연구)** 시장은 효과적인 인구정책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 제3장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관련 국·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다.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계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1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장 인식 개선

**제18조(인식개선사업)**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인구의 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2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 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민간의 참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업과 단체 등이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시의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시민·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인구정책 추진에 공헌한 사람 및 단체
2.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공헌한 기관 및 사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장려금 및 시상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주요 규정 사항

- 제3조제2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7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조의2

-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 고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 1. 제안이유

- 유료주차장 운영 시 지역 특수성에 따라 주차장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
-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우선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 고군산연결도로 내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 조례 제13조의 2의 별표 4(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사항을 신설
-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자체 자체 발굴과제 중 하나인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2. 주요내용

- 유료주차장 운영시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별표2)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 규 용어정비 : 장애자 → **장애인** (안 제19조의2)
- 주차대수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해 여성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를 권고하고,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여성 우선 주차구획 10퍼센트 이상 설치 의무화 (안 제19조의3)
- 고군산군도 내 차량증가로 장자도, 선유도 등 교통이 혼잡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회전을 증대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도서지역 급지 신설 및 주차요금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별표 1)
- 별표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의 **비고사항 신설**
-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자체 자체 발굴과제 중 하나인 주차장 조례 제21조 제4항 가산금 부과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 상위법령에는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조례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의무의 부과에 해당됨
  - 상위법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과 맞지 않음
- 상위법령과 관련한 오류사항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방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6층 교통행정과
- 전화: 063-454-3774
- FAX: 063-454-3769
- 전자우편: dozen007@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 (전화 063-454-37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 제19조, 제30조
- 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8조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입법예고 : 2018년 5월 중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4조제2항**” 을 “**법제4조제1항**” 으로 한다.

제3조의2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및 10항**” 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재래시장활성화**” 를 “**전통시장 활성화**”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의2제2항 중 “**영 제6조제1항**” 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호 단서 중 “**장애자**” 를 “**장애인**” 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여성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의**” 를 “**체납처분의**” 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은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개정 98.11.26, 99.10.06, 2001.06.15, 2002.09.30, 2005.04.30> <개정 2008.07.15> <개정 2009.03.0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금지 구분	구분	1회 주차요금		월정기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5시간이상)
		기본최초 30분이 내	30분 초과 매10분마 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금지	소형	500	200	50,000	40.00	85,000	6,000
	대형	600	300	65,000	52,000	115,000	9,000
2금지	소형	400	150	30,000	24.00	50,000	4,500
	대형	500	200	35,000	28,000	60,000	6,000
도서지역	소형	1,000	300	-	-	-	10,000
	대형	2,000	500	-	-	-	16,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의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 : 08:00 ~ 20:00(하절기), 08:00 ~ 18:00(동절기)

2) 야간 : 20:00초과 ~ 익일 08:00미만 까지(하절기)

18:00초과 ~ 익일 08:00미만 까지(동절기)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동 지역

나. 2급지 : 읍·면지역

다. 도서지역 :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4.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으로 2면이상의 주차구획선을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에 점유한 주차면수를 곱한 요금을 적용한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6. 시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은행등)에 참여하는 차량과 「주차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2008.07.15>

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써 국세청장 또는 군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삭제2009.03.02>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장애인수첩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개정2008.07.15>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의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개정2008.07.15>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개정2008.07.15>

12.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

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신설 2002.09.30>

13. 주차요금 산정시 10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보며, 총 주차시간이 10분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05.04.30><개정 2009.03.02>

1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03.02>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6. 도서지역 내 주차장의 경우 상가에서 10,000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2시간까지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2시간 초과시 최초 30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단, 도서지역 내 숙박업소에서의 숙박이 확인된 경우 숙박1일당 익일 14시까지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주차수입금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3.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시 설 물	설 치 기 준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 적용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 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사.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

아. 관리지역 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

물이 있는 경우에는 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로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인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이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 관련) < 삭 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시장은 <b>법제4조제2항</b>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del>법제4조제1항</del>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현행	개정안
<p>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대기환경보전법</u>」 제58조 제9항 및 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감면</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p>	<p>5. 「<u>대기환경보전법</u>」 제58조제11항</p> <p>----- -----</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 ----- ----- ----- -----.</p>
<p>1. (생략)</p> <p>2. <u>재래시장활성화</u>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p> <p><u>&lt;신설&gt;</u></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통시장 활성화</u> ----- ----- ---</p> <p>3. <u>그 밖에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u></p>
<p>②·③ (생략)</p> <p>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법 제19조제3항, <u>영 제6조제1항</u>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 「<u>주차장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 -----.</p>
<p>③·④ (생략)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5조제8호,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10목의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 ----- ----- -----.</p>
<p>1. (생략) 2. 노외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다만,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u>장애자</u>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 ----- <u>장애인</u> ----- -----.</p>
<p>3. (생략) <u>&lt;신설&gt;</u></p>	<p>3. (현행과 같음) <u>제19조의3(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u> ① <u>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우선</u></p>

현행	개정안
<p>제21조(과징금 처분) ① ~ ③ (생략)</p> <p>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b>징수의</b>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2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p>	<p><u>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p> <p>③ <u>여성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④ <u>여성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u></p> <p>제21조(과징금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⑤----- -----</p> <p><u>체납처분의</u> -----.</p> <p>&lt;삭 제&gt;</p>

# 공 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 「가축분뇨법」과 조례의 불일치한 부분 정비
  - 현행 조례 내용 중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 나. 조례에 적용된 건축법 용어를 「가축분뇨법」 용어로 변경
  - 현행 조례에 적용되어 있는 건축법 용어(축사, 신축·증축 등)를 「가축분뇨법」 용어(배출시설, 설치 등)로 변경
- 다. 주민동의 및 축종변경 관련 규정 정비
  - 주민동의 및 불명확한 축종변경에 대한 규정 정비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가축분뇨법」과 조례의 불일치한 부분 정비
  -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 ‘법 제8조제2항’ 을 ‘「건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으로 변경(안 제5조 제2항)

나. 조례에 적용된 건축법 용어를 「건축분뇨법」 용어로 변경

- ‘축사’ 를 ‘배출시설’ 로,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을 ‘설치, 증설(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재축 및 축종변경’ 으로 변경(안 제4조 제1항)

다. 주민동의 및 축종변경 관련 규정 정비

- 인접세대 관련 규정 삭제 등 정비(안 제4조 제2항 제6호)
- 축종변경 관련 규정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7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 063-454-3353, FAX : 063-452-8165)
- 전자우편 : ydi10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계 (전화 063-454-335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육과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을 “가축사육과 배출시설의 설치, 증설(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재축 및 축종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을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없이”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축사의 신축”을 “배출시설의 설치”로, “증축에”를 “증설에”로, “동의하되 당해 축사의 인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를 받은”을 “동의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축사 신축·증축”을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나 변경허가(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배출시설의 축종을 별표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가 같거나 감소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이 조례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lt;삭 제&gt;</p>

·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생략)

3. (생략)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과 축사의 신축, 증  
축, 개축 및 재축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1. ~ 4. (생략)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  
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 개축·재  
축하는 경우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  
분의 80이상, 증축에 대하여 100  
분의 90이상 동의하되 당해 축사  
의 인접 세대에 대하여 우선 동의  
를 받은 경우. 단, 축사 신축·증  
축 후 일부제한지역 안으로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  
으로 본다.

<신설>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 -----  
----- 가축사육과 배출시설의 설  
치, 증설(배출시설의 면적이 증가하  
는 것을 말한다.), 개축, 재축 및 축  
종변경 --.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 기존 배출시설  
의 증설 없이-----  
--

6. -----  
배출시설의 설치-----  
--- 증설에 -----  
동의하는 -----  
----- . ---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나 변경허  
가(변경신고) -----  
-----.

7.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배출시설의  
축종을 별표1에 따른 축종별 제한  
거리가 같거나 감소하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군산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축산폐수로 시민생  
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  
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  
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  
----- 가축분뇨-----

-----  
--.

② -----  
-----  
-----  
-----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  
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 군산시 공고 제2018-1044호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 군산시장

###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 폐지이유

- 품질시험실 및 조례의 실효성 없음
  - 전국적으로 3개 시·군(군산, 김제, 거창)만 운영하고 있었으나 우리시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2013년 운영 중단
  - 품질시험실은 1종류 시험만 실시(압축강도시험)
  - 건설공사의 주요 자재는 KS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부실시공, 불량자재 등 의심스런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시험 의뢰하고 있어 품질시험실 및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

#### 2. 주요내용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를 폐지함

#### 3. 의견 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4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방문: (54078)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6층 감사담당관
- 전화: 063-454-2113
- FAX: 063-452-2109
- 전자우편: jksjdy@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감사계(전화 063-454-23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붙임

##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참고 >

#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제정) 2005.11.21 조례 제672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 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시 본청과 사업소 및 읍. 면. 동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공사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1. 총공사비 7천만원이상 5억원미만의 토목공사
2. 건축 연면적 300㎡이상 660㎡미만 또는 3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당해 공사의 콘크리트량이 150㎡이상인 공사

②시 건설공사품질시험실장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및 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규모이하의 공사도 품질시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시험실 운영 및 관리)** ①시 건설공사품질시험실(이하 “시험실”이라 한다) 운영은 시 감사담당관실 조사감찰업무담당에서 한다.<개정2007.01.30>

②시험실 관리는 감사담당관(이하 “시험실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시험방법과 규격기준)** 시험방법 및 규격기준은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험의 종류)**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정시험 :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험에 앞서 자재의 품질선정과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2. 관리시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을 검사하고 이를 관리하여 구조물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3. 검사시험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 제2장 시료의 채취

**제6조(선정 및 관리시험의 시료채취)** ①선정 및 관리시험의 시료채취는 시험실 시험요원 또는시험실장이 시료채취공무원으로 지정하는 자가 공사감독, 공사감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중 1인의입회하에 채취한다.

②시멘트가공제품, 콘크리트가공제품 등 완제품은 공사감독관이 납품업자 또는 생산업자 입회하에 채취, 봉함한다.

**제7조(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①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시험요원이 공사감독공무원과 시공자 또는 납품업자의 입회하에 채취, 봉함하여야 한다.

②제6조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는 공사감독공무원이 시험실담당자에게 직접 인계조치 하여야 한다.

## 제3장 선정 시험

**제8조(선정시험의 실시)** 공사설계 및 시공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성이 요구되면 선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조물의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및 흙의 물리적, 역학적 시험
2. 구입자재(관급 또는 일반구입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및 법령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 인정을 받은 자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제4장 관 리 시 험

**제9조(관리시험의 실시)** ①시 본청과 사업소 및 읍. 면. 동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험실에 의뢰하여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 표시품 및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 또는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에 대하여는 관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험요구자는 시험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경화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한 몰드제작은 시험요원이 현장 제작하고, 강도파괴 시험시에 감독관이 입회 확인한다.

**제10조(관리시험대상)** 관리시험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장이 필요하다고판단시 별도의 관리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1. 시멘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두께시험
2. 아스팔트 콘크리트 두께 및 밀도 시험
3. 토공과 보조기층의 입도 및 다짐 시험

**제11조(관리시험의 기준)** 관리시험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하고 그 시험과 시험성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그 시험결과에 의한다.

**제12조(관리시험의 보존)** 공사감독관은 당해 공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관리시험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의뢰)** 관. 과. 소장 및 읍. 면. 동장이 품질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험의뢰신청서를 시험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시험성과의 관리

**제14조(검사시험의 실시)** 준공검사시 또는 기타 시험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검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시험결과 통보)** 시험실장은 시험실시의 결과에 대하여 성과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시험의뢰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품질시험성과의 관리 및 활용)** ①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은 시험실장이 발행한 품질시험성과표를 검토.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질시험성과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처리하여야 한다.

## 부 칙 (2005.11.21 조례제 672호)

①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대상 실시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사를 제외한 시험대상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1. 콘크리트 포장공사
2. 아스팔트 포장공사
3. 도로굴착공사(기존도로 복구공사)
4. 하수도 공사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지곡동 1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139-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
  - 나. 명 칭 :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연장(m) )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m <sup>2</sup> )	
대로2-11	990m	30m	전북고111 ( '95.6.29.)	706m	30m	19,388㎡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1. 12.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 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산	지곡	64-4	구	859	17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	“	“	137-9	구	302	9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	“	63-1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	“	“	327	답	2,992	5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81, 103동805호(평화동2가, 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	이재규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2	임실농업협동조합		
									군산시수송동로91,105동1102호(수송동,수송아이파크)	최명순		
5	“	“	128	답	1,157	416	군산시하나운로48, 203동401호(나운동, 롯데3차아파트)	고형구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업협동조합		
6	“	“	128-3	답	991	636	군산시 구영4길 38(영화동)	김종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지분 1/2	
							경기도용인시기흥구전산로222, 비동1402호(보정동, 죽전신세계체넨)	김종선			지분 1/2	
7	“	“	129	답	1,152	554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 아파트 101동 608호	장영록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37	옥구농업협동조합		
8	“	“	129-1	답	2,466	52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6-1 한양운남 비동 102호	전기현			지분 31/100	
							군산시 나운동92 금호타운아파트 201동 1204호	이두철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김점자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 1동 403호	임유정			지분 19/100	
9	“	“	132-1	답	1,912	34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2길 6	정만임			지분 1/2	
							군산시 중앙로76-13(중앙로3가)	정만숙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73(유천동)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지분 1/2	
10	“	“	136-1	답	2,025	480	익산시 영등동771-3 우미아파트 101동 901호	권기복				지분 1/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1동 403호	임유정				지분 2/8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로343, 210동302호(지족동, 반석마을2단지)	강성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2/8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473-2서곡현대아파트 105동 601호	서은수				지분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 101동 402호(산천동, 리버힐삼성아파트)	박희주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협동조합	지분 1/8	
11	“	“	136-7	답	2,025	603	익산시 영등동771-3우미아파트 101동 901호	권기복				지분 1/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1동 403호	임유정				지분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43, 210동302호(지족동, 반석마을2단지)	강성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2/8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473-2서곡현대아파트 105동 601호	서은수				지분 2/8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17, 101동402호(산천동, 리버힐삼성아파트)	박희주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협동조합	지분 1/8	
12	“	“	128-2	답	992	120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2동 103호	손균홍				
13	“	“	129-2	답	842	70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1566-1 한양운남비동 102호	전기현				지분 31/100
							군산시나운동92금호타운아파트201동 1204호	이두철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김점자				지분 25/100
							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637남양황제아파트 1동403호	임유정				지분 19/100
14	“	“	126-1	답	1,413	1,413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군산시 번영로 162	군산농업협동조합		
소계 (14필지)						6,080						

나. 편입토지조서(대로2-11호선)

번호	소재지 시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예 정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5	군산 지곡	64-1	답	4,122	1,435	전주시완산구효자동3가169(효자동3가)	최용기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분 1157/4122	
						전주시완산구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박춘원	"	"	지분 904/4122	
						군산시 나운동 155-5대우아파트 102동 702호	이두철	"	"	지분 904/4122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투아파트 102동 801호	김경원	"	"	지분 1157/4122	
16	"	"	136-6	답	2,145	1,030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2576/17160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98-19	문주	군산시 수송동 24-13	군산원예농 업 협동조합	지분 1288/17160
							군산시 수송동로 91, 106동 201호 (수송동, 수송아이파크)	김진희			1288/17160
							군산시 개정동 585-20	문성희			지분 2576/17160
							익산시 모현동1가 762-13	신순자			지분 4296/17160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1동 902호	최경락			지분 5136/17160
17	"	"	137-16	답	2,221	757	군산시 부곡1길 5(나운동)	고종규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향토현농업 협동조합	지분 992/7131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100	김영국			지분 114/7131
							군산시 의료원로32(지곡동)	김석분			지분 545/7131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621	성용례			지분 95.5/7131
							군산시수송동로36103동502호(수 송동, 한라비발디1단지아파트)	한명례			지분 95.5 /7131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513-4	장정선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5동 1102호	양경희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155-10 동신아파트 106동 1501호	박미자			지분 661/7131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주공아파트 207동1304호	이상언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102동 603호	김종기			지분 661/7131
							서울 은평구 불광동248 미성아파트 11동 110호	유호석			지분 661/713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현대아파트 104동 201호	유종성			지분 661/7131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331/7131							
군산시 개정동 585-20	고치영			지분 331/7131							
18	"	"	138-6	답	456	456		군산시			
19	"	"	139-6	답	793	793		군산시			
20	"	"	140-11	답	345	345		군산시			
소계 (6필지)						4,816					

나. 편입토지조서(대로2-11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 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1	군산	지곡	137-17	답	654	654		군산시			
22	“	“	479-7	도	13	13	농식품부	국			
23	“	“	140-12	도	3	3	군산시 지곡동 79	강종렬			
24	“	“	479-3	도	1,893	30	농식품부	국			
25	“	“	63-7	도	155	5	군산시 지곡동 901	채상묵			
26	“	“	140-13	도	63	63		군산시			
27	“	“	산91-2	임	793	303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0 성원아파트 101동 1304호	최규송			
28	“	“	산92	임	3,074	1,844	군산시 삼학동 271-8	최규송			
29	“	“	328-9	전	2,195	2,195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군산시 공항로 422(산북동)	서군산농업 협동조합	
30	“	“	328-6	전	1,373	44	군산시 금암동 284-12	나동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나운센 터지점)	농업협동조 협중앙회 농협은행 주식회사	
31	“	“	328-8	전	1,563	116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1길 21, 902동 1003호(공릉동, 청솔아파트)	남상호			지분 397/1563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1길 21, 902동 1003호(공릉동, 청솔아파트)	구성자			지분 397/15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0, 102동 1805호(원효로4가, 강변삼성스위 트)	박귀선			지분 132/15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68, 101동 702호(당산동1가, 진로아파트)	이선우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농 업협동조합	지분 637/1563
32	“	“	328	전	1,322	663	익산시 월성동 96-28	유덕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31-4, 108호	전주파티마 신용협동조 합	
33	“	“	327-1	전	1,693	161	서울 중구 신당동 366-97 서울시니어스타워 1105호	강순남			
34	“	“	329	전	1,058	1,058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국 (군산세무 서)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 보험공단	
35	“	“	329-1	전	3,203	759	군산시 지곡동 329-1	고병구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농 업협동조합	
36	“	“	335	전	1,818	218	군산시 축동로42, 302동1001호 (수송동, 군산수송제일오투그란데1단지)	차관순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업 협동조합	
37	“	“	127	전	1,190	363	군산시 남수송3길 22(수송동)	오종명	서울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계(17필지)						8,492					
총 계(37필지)						19,388					

다. 편입 지장물조서(대로2-11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전체적 (㎡)	편입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산	지곡	329	창고	목조	5.3	5.3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창고	목조	7.0	7.0					
2	“	“	328-9	창고	목조	5.4	5.4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창고	목조	4.3	4.3					
3	“	“	329-1	창고	블럭스레트	200.9	200.9	군산시 지곡동 329-1	고병구			
				기름탱크	철제	1식	1식					
				컨테이너	철제	19.8	19.8					
				감나무		1주	1주					
				양계장		718.8	718.8					
4	“	“	산92	분묘		6기	6기	군산시 삼학동 271-8	최규송			
5	“	“	64-4	창고	목조	5.0	5.0		미상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지곡동 658-4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수송동 658-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5호선)사업
  - 나. 명 칭 : 남북로~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실시계획 내용			비고
	연장(m) )	폭원(m)	최초결정일	연장(m)	폭원(m)	면적(m <sup>2</sup> )	
중로2-15	165m	15m	전북고136 ( '87.10.22.)	165m	15m	2,58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2. 12.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 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산	수송	658-48	답	760	760	군산시 신평안길 49	고순예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9, 104 1901호(삼천동1가 세창짜임아파트)	이태우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9, 104동 1901호(삼천동1가 세창짜임아파트)	고석미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9, 104동 1901호(삼천동1가 세창짜임아파트)	이사무엘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79, 104동 1901호(삼천동1가 세창짜임아파트)	이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2가 길11, 303호(익선동, 윤남 오피스텔)	이예지			
2	군산	수송	51-35	답	270	270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34, 106 동 1303호(북현동, 북현청구 타운)	김경임			
3	군산	수송	51-33	답	415	415	군산시 산북동 3538 코오롱 아파 트 103동 408호	윤병철			
							군산시 나운동 489 금호타운 아파트 104동 209호	이영순	군산시 수송동 24-13	군산원예 농협동조 합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 3차아파트 201동 902호	유현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1길 20, 203동 1803호(신정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유호석			
							군산시 수송로 49, 104동 209호 (나운동 489,나운금호1차 아파트)	자메스시순 (이시순)	군산시 하포로 29	군산원예 농협동조 합	
4	군산	수송	51-31	답	576	576	군산시 나운동 401 삼성아파트 107동 1303호	김행순			
							군산시 삼학동 811-1 대우아파트 104동 1503호	김현택			
5	군산	수송	51-28	답	176	176	군산시	국			
6	군산	수송	51-19	답	143	143	군산시	국			
7	군산	수송	761-3	구	12040	242	농수산부	국			
소계 (14필지)						2,582					

## 도로명주소(부여·분할·합병·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15.

### 군 산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12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2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30-44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53-3	20180327	20090710	성산면 성덕리에 금강철새조망대가 위치, 지형명칭 반영
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84-2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88 (미장동)	20180223	20100125	주변에 경포천이 흐름
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2-2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146 (미장동)	20180223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2-9, 22-10, 22-18, 22-21, 22-22, 22-23, 23-12, 23-13, 23-14, 23-28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179 (수송동)	20180222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19-1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256 (수송동)	20180102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6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721-3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688 (소룡동)	20180420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7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900	전라북도 군산시 공향로 22-9 (소룡동)	20180108	20100125	군산공향으로 관통하는 도로
8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869-5	전라북도 군산시 공향로 22-11 (소룡동)	20180124	20100125	군산공향으로 관통하는 도로
9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869-4	전라북도 군산시 공향로 22-13 (소룡동)	20180124	20100125	군산공향으로 관통하는 도로
1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869-3	전라북도 군산시 공향로 22-15 (소룡동)	20180404	20100125	군산공향으로 관통하는 도로
1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50-7, 50-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58-28	20180222	20100125	마을명칭인용
12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00-3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대야관동로 104	2018011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61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810-40	20180328	20100125	군산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
1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854-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956	20180220	20100125	군산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
15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20-3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로 67 (산북동)	20180108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16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311-8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	20180212	20100125	옥산면 대리에 금성산성이 소재하여 산성이름에서 인용
17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645, 645-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수림로 233	20180413	20100125	성산면 산곡리에 수림평야 존재로 지역명칭 인용
18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69-19	전라북도 군산시 신철로 36-7 (나운동)	20180212	20100125	옛 지명 인용
19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22-6	전라북도 군산시 아리랑로 2-1 (중앙로1가)	201804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88-4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147 (조촌동)	201801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교봉리 362-7, 362-6, 569-3, 569-6, 570-5, 570-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3-52	20180327	20100125	오성산 옆을 지나가는 709번 지방도로 오성산에서 인용
22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486-1, 1486-4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43	20180323	20100125	주변에 옥구저수지가 있음
23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779-6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로 167	201804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4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48-9	전라북도 군산시 외향로 852 (소룡동)	20180409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50-21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30 (조촌동)	2018012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6-5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46 (미장동)	20180312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6-4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48 (미장동)	20180312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5-6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73 (미장동)	20180320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29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04-3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87 (미장동)	20180104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30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회등리 699, 700-1, 701-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청룡로 247	20180413	20100125	상장근 북쪽에 청룡산 위치, 102번 면도로 산이름 인용
3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929-1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104 (수송동)	20180327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2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607-11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로 74 (산북동)	2018020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04-4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63	201804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4	전라북도 군산시 중동 223-14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85-5 (중동)	2018032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35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1011-1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398 (해망동)	20180228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6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815-1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74-26	20180104	20100125	신란 경덕완 8년(서기749년)때 현 회현면이 회미현 인용
37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608-15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74-28	20180208	20100125	신란 경덕완 8년(서기749년)때 현 회현면이 회미현 인용
3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5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100 (미장동)	20180319	20150127	미장동의 남쪽도로
39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1015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산단2로 229 (오식 도동)	20180126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 으로 부여
40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3943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2로 20 (조촌동)	20180119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는 나루터가 있던 옛지명
41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18	전라북도 군산시 공포1로 24-9 (조촌동)	20180206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는 나루터가 있던 옛지명
42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동 45-1	전라북도 군산시 개사길 75 (개사동)	201801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43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윤희리 903-1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안길 71	20180301	20090508	윤희, 아산, 발산, 통사리를 지나는 도로
44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22-13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2길 31 (조촌동)	2018032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922-14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2길 33 (조촌동)	2018032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6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17-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1길 36	20180119	20070528	고봉리 고봉 마을소재
49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188-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곡동길 86-11	20180412	20070528	도암리 곡동 마을 소재
48	전라북도 군산시 영화동 19-13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103-2 (영화동)	2018022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9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552-7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을3길 8-6	20180412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50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352-8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평길 24-25	20180327	20070528	대정리 구평마을 소재
5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28-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간치메2길 37	20180423	20070528	옛 지명에서 서수번호사용
52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974-14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남수라2길 64	20180330	20070528	옥봉리 남수라 마을 소재
5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259-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남척동길 53-3	2018030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5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908-9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지산길 3	20180227	20070528	대정리 대지산 마을
55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40-9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1길 28 (소룡동)	201804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6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40-8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1길 34 (소룡동)	201804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7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40-7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1길 38 (소룡동)	201804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926-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포길 29-38	20180417	20100125	금암리 마포 마을 소재
5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926-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포길 29-40	20180417	20100125	금암리 마포 마을 소재
6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549-2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안길 18 (문화동)	20180112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 여
61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133-1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2길 6-3 (미원동)	20180103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 여
62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133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안길 26 (미원동)	20180103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6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86-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길 33-11 (미장동)	20180424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64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873-2	전라북도 군산시 미제2길 16 (미룡동)	2018032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6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146-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봉황길 118-13	20180227	20100125	마을 지명인용
66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409-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북내길 2-12	20180227	20070528	쌍봉리 북내 마을 소재
67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90-7	전라북도 군산시 분멜1길 29 (오식도동)	2018013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68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71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6길 102 (비응도동)	20180418	20100125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69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2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산남길 130-7	20180117	20070528	산곡리 산남 마을 소재
7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69-4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2길 5-12 (나운동)	2018032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7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46-16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5길 9-4 (나운동)	201804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72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46-15	전라북도 군산시 상산5길 9-6 (나운동)	2018012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7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46-3	전라북도 군산시 상산5길 9-8 (나운동)	2018012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7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40-2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안길 52-2 (나운동)	20180102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7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095-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문화길 65	20180129	20100125	서수리 문화마을 소재
76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176-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신기길 29	20180301	20100125	지명에 따른 부여
77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25-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송촌3길 52	20180216	2009050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 사용
78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688-2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수심길 91	20180108	20070528	여방리 수심 마을 소재
79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76, 73-75	전라북도 군산시 신금길 40-2 (금암동)	2018011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80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566-3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15	20180222	20070528	선연리 신장원 마을 소재
81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3028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안길 5 (산북동)	20180126	20100125	마을지명
82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53-8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1길 5-3 (지곡동)	20180322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83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319-2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안정길 104	201801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84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319-4, 319-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안정길 106	201801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8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465-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1길 54	20180424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86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358-2	전라북도 군산시 영명길 29 (구암동)	2018012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87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387-3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서북길 139	20180124	20070528	옥서면 북쪽 관통도로
88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300-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서북길 155	20180409	20070528	옥서면 북쪽 관통도로
89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603-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왕산2길 3-11	20180227	20100125	왕산마을 소재
9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601-29	전라북도 군산시 외산4길 46-1 (구암동)	2018040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9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508-17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용호길 9	20180102	20070528	남내리 용호 마을 소재
9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573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우곡제길 158-40	20180306	20100125	미산과 후죽사이에 우곡제 소재
9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363-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우치산4길 33	20180321	20110329	우치산 마을 지명인용
9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41-4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운원길 18-7	20180411	20100125	마룡리 운원 마을 소재
95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527-6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92	20180314	20070528	옛날부터 불려오던 이름사용
96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505-163	전라북도 군산시 입사길 73-25 (산북동)	20180108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97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4-7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1길 23 (장미동)	2018010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98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산8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1길 46	20180125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99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270	전라북도 군산시 장재길 22-12 (미원동)	2018021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0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230-7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접산길 17-28	20180314	20070528	접산마을 소재
101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438-7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2길 1-3	20180221	20070528	증석리 증석마을소재
102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156-8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2길 1-5	20180308	20070528	증석리 증석마을소재
103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522-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진장1길 43-9	20180223	20100125	부곡리 진장 마을소재
10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5-12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안1길 24 (수송동)	201801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105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111-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77-12	20180405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6	전라북도 군산시 장계동 46-63	전라북도 군산시 풍문안2길 50 (장계동)	2018022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10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40-4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3길 24 (나운동)	20180125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방향성으로 도로명 부여
108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2039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남2길 17	20180322	20141231	길 생성
109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1 (미장동)	20180104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5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9길 1 (미장동)	20180104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1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0-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2길 3-7 (미장동)	20180412	20150127	도로 신설
11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87-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2길 12 (미장동)	20180306	20150127	도로 신설
11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7-1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5길 4-3 (미장동)	20180418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8-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5길 4-6 (미장동)	20180130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3-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5길 11 (미장동)	20180320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계리 160-4, 796-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대학로 741	20180510	20100125	군산대학교를 지나는 도로
117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208-4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404	20180430	20100125	군산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
11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3-6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남로 26 (수송동)	20180426	20100125	수송택지의 남쪽도로로 수송동에 서 인용
119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21-6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남로 40 (수송동)	20180426	20100125	수송택지의 남쪽도로로 수송동에 서 인용
12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679-11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46-11 (소룡동)	201805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2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106-2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79	20180502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2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644-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최호장군길 86	20180511	20070528	최호장군 묘지소재마을
123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2037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남3길 2	20180425	20141231	길 생성
124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9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2 (미장동)	20180502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순 번	도로명주소	폐지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로 90 (미장동)		20180209	20100125	주변에 경포천이 흐름
2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70 (미장동)		20180305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3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138 (미장동)		20180209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4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179 (수송동)		20180222	20100125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5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 (조촌동)		20180110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6	전라북도 군산시 백룡로 113 (조촌동)		2018012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7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로 62 (명산동)		20180219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8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52-3		20180213	20100125	오성산 옆을 지나가는 709번 지 방도로 오성산에서 인용
9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398 (해망동)		2018021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103-2 (영화동)		2018020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1길 12-2 (금암동)		20180214	20100125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 여
12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2길 5-12 (나운동)		2018012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3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11		20180208	20070528	선연리 신장원 마을 소재
14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11-1		20180208	20070528	선연리 신장원 마을 소재
15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13		20180208	20070528	선연리 신장원 마을 소재
16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신장원길 15		20180208	20070528	선연리 신장원 마을 소재
17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안흥길 78		20180504	20100125	마을명칭에서 인용
18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1길 23 (장미동)		20180104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9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증석2길 1-3		20180221	20070528	증석리 증석마을소재
20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안1길 24 (수송동)		2018010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성 도로명 부여
21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2길 22 (소룡동)		20180321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년 5월 14일

### 군 산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군산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2018년 고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무녀,신시,장자,관리도리)
3. 사업위치 및 면적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7-1번지 외505필(231,090㎡)
4. 대행업무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063-454-4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2019년도

##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8-1043호

2018/2019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1. 2018/2019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 방 법	품목	해역 별	면적 (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6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명도 인근	40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7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명도 인근	30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10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횡경 도 인근	60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13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관리 도 인근	15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0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관리 도 인근	15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5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무녀 도 인근	570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제소전화해, 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8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개야 도 인근	57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596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면허어업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 방 법	품목	해역 별	면적 (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8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방축 도 인근	56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29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9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방축 도 인근	85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29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11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신시 도 인근	88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42호,제5707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12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신시 도 인근	75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97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15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무녀 도 인근	67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38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16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비안 도 인근	192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79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17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비안 도 인근	186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79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18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비안 도 인근	278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79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19	해조류 양식	건홍식 부류망홍	김 등	비안 도 인근	338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79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2	복합 어업	건홍식 부류망홍 바닥식 (살포식)	해조류 (김), 패류	연도 인근	100	일반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5	복합 어업	건홍식 부류망홍 바닥식 (살포식)	해조류 (김), 패류	개야 도 인근	80	일반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수면 번호	어업 종류	양 식 방 법	품목	해역 별	면적 (ha)	개발 방법	개 발 조 건
4	복합 어업	건홍식 부류망홍 바닥식 (살포식)	해조류 (김), 패류	개야 도 인근	150	일반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682호) 포기 및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공증)으로 일반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기존 어촌계 어업면허 대체 개발
22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등	십이 동파 도 인근	10	일반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23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등	십이 동파 도 인근	10	일반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일반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13조에 의거 면허우선순위 결정
26	패류 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등	비안 도 인근	60	한정 어업 면허	○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승인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4	마을 어업	-	해조류, 패조류, 정착성 수산 동식물	비안 도 인근	29	한정 어업 면허	○ 기존어장(제5265호) 관련기관 등 협의 조건 (공증)으로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수산연구·기술보급기관 검토의견 준수 ※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어촌계에 개발

## 2. 2018/2019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조건

-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수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박항해 및 어장간 거리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계획이 고시된 수면이나 공익사업으로 폐업보상이 완료된 수면,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 어업분쟁 및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일반면허 및 한정어업 면허(신규개발, 재개발, 대체개발 등)는 관계기관(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개발가능 의견 또는 협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면허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수면을 신규개발 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승인 하여야 한다.
- 어장개발계획이 금회 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사업(국제해양관광 단지조성, 새만금 신항만개발,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련 사업, 새만금 내부 개발 해사토 채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개발하고 면허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분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WTO/DDA, FTA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 품목, 종묘 확보 곤란 및 수급 불균형으로 안정 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개발하여야 한다.
- 동 기본지침 행정사항에 의거 추가사항이 발생 확정시에는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 2018/2019년 어장이용개발 승인 공고 기간 : 2018. 5. 14. ~ 2017. 6. 12.
- 면허의 우선순위결정 신청서 제출기간 : 2018. 6. 4.부터 2018. 6. 12. 18:00 까지
- 제출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1층) 접수 창구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나.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어촌계 기존어장 재배치 포기조건 대체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 위치도는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해양수산과 (☎ 063-454-2912)

2018. 5. 14.

군 산 시 장